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시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면수 산정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형 주택에만 한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은 완화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마목 원룸형 임대주택의 정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추가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애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